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46)
검 토 보 고 서**

2025.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646

I. 개정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 3. 31.

다. 회 부 일 : 2025. 4.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실내에 한해 운영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실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시설과 본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내외를 불

문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 표기(안 제7조의2)
- 민간 키즈카페의 지원범위 대상의 명확화 및 중복개념 삭제(안 제7조의3)
-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 대상을 실제 이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인 아동을 중심으로 표기되도록 변경(안 별표)
- 그 밖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3. 5. ~ 3.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시장이 실내·외를 불문하고 아동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용어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수정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대상을 이용료 부과대상인 아동으로 한정하기 위함임.

2 주요사항 검토

□ 서울형 키즈카페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 제5호 신설)

- 안 제2조(정의) 제5호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용어를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4.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	바. ----- 서울특별시(이하

동 <신 설>	“시장”이라 한다)----- 5. “서울형 키즈카페”란 아동의 놀이 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지원을 목 적으로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 다.
-----------------------------	---

-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키즈카페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관광진흥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관계법령이 적용되는바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 (안 제7조의2 개정)

- 안 제7조의2에서는 기존 조문제목 및 내용의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규정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수정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u>실내 어린이놀이시설</u> 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① ----- ----- 서울형 키즈카페를 -----.

② 제1항에 따른 <u>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u>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서울형 키즈카페 ----- -----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u>별표 1</u> 과 같다.	③ ----- ----- ----- 별표와 -----.
④ 시장은 <u>실내 어린이놀이기구</u> 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서울형 키즈카페를 ----- ----- -----.

- 현행 제7조의2는 민선8기 공약 사항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이 2022년도부터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실내 놀이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신설되었음.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생략)...

- 또한 현행 제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가상승률 등과 같이 수시로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료를 아래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이용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료 <개정 2024. 6. 28.>

구분	대 상	이용요금	비 고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2시간 기준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입장 가능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공간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시설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 안 제7조의2에 따라 조례의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용어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수정할 경우 조례에서 위임받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한 규정으로 조문 및 별표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잃게 됨.
- 따라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에 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조례 시행규칙을 함께 공포·시행하거나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늦출 필요가 있음.

- 이에 집행부서는 조례 개정안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공포·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2025.3.5.~3.25.)를 마치고 202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¹⁾,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69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이용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u>실내 어린이놀이기구</u> 이용료는 <u>별표 1</u> 과 같이 정한다.	제2조(이용료) ----- ----- ----- 서울형 키즈카페 ----- 별표와 -----.
제3조(세부운영)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세부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 -----.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입장 가능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공간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 **(신설)** 상설형이 아닌 가변형, 비상설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용료를 별표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 아이돌봄담당관-3937,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5.3.26.

- 안 제7조의2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에 관해 위임받은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의 별표에서는 이용요금을 이전과 동일한 회당 5,000원으로 규정하면서 ‘상설형이 아닌 가변 또는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료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는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확정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생략)...

- 다만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그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제처에서도 조례에서 이용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 대해 그 사무의 성질상 ‘**지나치게**’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지방자치법」 제29조²⁾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³⁾.

- 또한 안 제7조의2에서는 이용료와 관련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형태의 ‘행정규칙’ 형식이 아니라 ‘자치법규’인 ‘조례 시행규칙’ 명시적으로 형식을 지정해 위임한 사항임.

개정안 제7조의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④ 시장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용료를 정하도록 입법형식을 정하여 위임하였는데,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키즈카페 중 상설형에 대해서만 정하고 가변형, 비상설형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조례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은 상하위 관계로 보기 어려워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다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례가 하위법의 입법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반함.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의견19-0045, 2019.2.22. (요청기관:서울특별시)

대법원 2012.7.5.선고 2010다72076 판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위임 근거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의 형식을 특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형식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정입법이다. 예컨대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그 위임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왜냐하면 입법자가 하위행정입법의 구체적인 입법형식을 지정하여도, 그 하위 행정입법에서 형식적으로 대강만 정하고 ‘조례 시행규칙 심사’ 절차가 없는 간편한 ‘자신의 행정규칙’으로 내용을 정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입법자의 구체적인 입법 형식 지정 권한을 형해화하는 우회로가 창설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가변형 또는 비상설형 키즈카페가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기 지나치게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개정안에서 이에 대해 ‘시장이 따로 정한다.(행정규칙)’라고 위임한 바가 없으면 개정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입법형식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또한 조례에서 이용료에 관해 ‘시장이 따로 정한다.(행정규칙)’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되, 고시 방법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안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관련해서만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위임받은 개정규칙안 제2조의 별표에서는 ‘이용료’ 뿐만 아니라 ‘대상(0세~9세)’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짐.

개정안 제7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는 별표 과 같이 정한다.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연령별 이용료를 차등하거나 이용료를 규정함에 있어 연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구분하는 것은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이용료에 대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현행 조례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조례에서 직접 정하거나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이용료 감면대상 아동 기준 변경 (안 제7조의2제3항)

- 안 제7조의2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이용료 감면대상을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별표로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① ----- 서울형 키즈카페를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서울형 키즈카페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u>별표 1</u> 과 같다.	③ ----- 별표와 -----.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서울형 키즈카페를 -----.

- 또한 개정안에 따른 별표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른 별표 1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가구원 또는 직계비속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u>가구원</u>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u>그 직계비속</u>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u>그 직계비속</u>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u>그 직계비속</u>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u>그 직계비속</u>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u>그 직계비속</u>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u>그 직계비속</u>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u>그 직계비속</u>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입장료 전액 감면

- 현행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이용료 부과대상’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의 이용료 감면 규정은 ‘이용료 감면대상’을 보훈관계 및 기타법령의 감면 대상을 그대로 이기하면서 ‘이용하는 아동보다 더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료 <개정 2024. 6. 28.>

구분	대 상	이용요금	비 고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2시간 기준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신설 2022. 10. 17.>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전액 감면

- 따라서 집행상의 혼란의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료 부과대상과 감면대상의 범위를 일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감면대상을 이용료 부과대상인 ‘아동’으로 한정하기 위해 아래 비교표와 같이 기존 대상에 ‘가구원’ 또는 ‘직계비속’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가구원’의 개념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가 포함되고 ‘직계비속’은 직계로 내려가는 혈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이용료 부과대상(아동)과 이용료 감면대상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

<현행과 개정안의 감면대상(별표) 비교표>

현행	개정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u>가구원</u>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및 그 직계비속</u>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u>및 그 직계비속</u>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및 그 직계비속</u>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및 그 직계비속</u>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및 그 직계비속</u>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u>및 그 직계비속</u>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및 그 직계비속</u>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현행과 같음)
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위의 별표 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에는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1호), 유족 중 선순위자(2호) 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3호)의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되어 당초 개정취지와 다르게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시장이 실내·외를 불문하고 아동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용어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수정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대상을 이용료 부과대상인 아동으로 표시하기 위함임.
- 다만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례 시행규칙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변형’, ‘비상설형’ 키즈카페 이용료를 시장이 별도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필요해 보이고, 이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조례 정비는 이용료 부과대상인 아동에 한정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종훈	02-2180-8148